

부산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가단3332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4893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가단333244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2. C

피고 C의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23. 3. 10.

판결선고 2023. 3. 24.

주문

1. 피고 B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E(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한 2022. 3.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B은 D,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2. 5. 30.

접수 제67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은 D,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2. 7. 28. 접수 제9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 E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7. 1. 24. D, E에 대하여 “D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3,622원 및 그 중 15,423,211원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31907호 지급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061634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7. “D은 원고에게 6,600,026원 및 그 중 4,216,850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 E과 피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2. 3.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들인 D, E, 피고들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 2) D, E 및 피고들이 2022. 5. 26.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의 단독소유로 하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 E과 피고 C은 그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하였다.
- 3) 이 사건 부동산이 2022. 5. 3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들 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피고 C이 2022.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B로부터 경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의 사해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 E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도록 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의 사해행위가 아님은 물론, 가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피고 B

- 망인이 2022. 3. 10. 사망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은 1993. 11. 29.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1,000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상속을 포기하고, D은 2001. 9. 30.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1,500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와 같은 E, D의 상속포기를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은 원고의 D, E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 피고 C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C이 망인 부양 및 상속지분 포기 대가이고 그 등기 당시 피고 C은 원고의 D, E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로 법정 고려기간 내에가정법원에 그 신고(민법 제1019조, 제1041조)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 B의 주장에 따르면 E, D의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E, D이 법정 고려기간 내에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한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당시 또는 전득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함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E, D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하고, 피고 B은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C은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별지

1) 원고는 청구취지 4항에서 “피고 C은 피고 B과의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4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2.7. 28. 접수 제9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주문 제3항의 오기임이명백하다.